

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【김지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4. 26.

행 정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경 과

의안 제317호로 2024년 4월 9일 김지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  
되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법정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의 정의를 규정하고, 지  
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 육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  
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
나.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의2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소상공인기본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4. 4. 4.~ 4. 9.)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“소상공인연합회 지회”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2조제4호~제5호(정의)에서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근거하여 “소상공인연합회”와 “소상공인연합회 지회”를 구체적으로 규정함.
  - 안 제4조의2제2항(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)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.
  - 안 제4조의2제3항(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)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.
- 검토 결과
  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1)에 따라 본 조례는 영등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, 경영안정,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대책의 제도적 근

---

1)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  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거를 마련하고자 제정(2010.12.30.)된 바 있음.

- 이번 일부개정은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, 고금리·고물가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,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.
- 한편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2) 를 살펴보면 보조금 지출은 상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및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기에 법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제2항3)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(支會)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.
- 또한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제9조4)에 근거하여 사업비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직접 교부하고,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교부할 수 있게 규정하여 보조금 교부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보여짐.

2)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3) 제25조(연합회의 사업)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5조의2(보조금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.

4) 제9조(지방보조금 교부방법)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
# 참 고 자 료

## 1 소상공인기본법

-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- 제25조(연합회의 사업)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25조의2(보조금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.

## 3 지방재정법

-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